보내는 사람			
	"캐릭터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 (병무민원상담)	또는 로고"		

○ 병무청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http://mwpt.mma.go.kr

	(평시	훈련용)		입영구분	
통지번호	병력동원훈	<b>큰소집 통지</b> 사		□ 개별입영	□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					
입영부대		중대			
훈련기간					
훈련장소(도착지)					
차량탑승 장소/시간					
「병역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같은	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	4항에 따	라 입영할 것을	을 통지합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개별입영 대상은 입영일시까지 <mark>훈련장소로</mark> 입영해야 하며, 차량탑승 대상은 탑승시간까지 탑승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때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1. 입영시간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전역증, 나라사랑카드 등)이 없는 경우 입영할 수 없으며 무단불참으로 간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입영 하실 때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 2. 훈련 복장은 군 전역 시 지급받은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을 착용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미착용하거나 미지참한 경우는 훈련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 귀가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체형 변화로 전투복이나 전투화가 맞지 않더라도 착용 또는 지참하고 입영하시면 동원훈련소집부대(훈련장) 에서 체형에 맞는 것으로 대여해 주거나 교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내용 뒷면 참조)

- 3.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해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5.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입영 안내 및 유의 사항 1. 훈련장소 교통편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일자/교통편 훈련장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소집부대장이 입영안내 서신으로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통편 2. 보안상 병무민원포털에 공개가 곤란한 일부 부대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http://mwpt.mma.go.kr) 훈련소집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sub>1</sub>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지서 3. 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앱 •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하시 면 됩니다. 1.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 받았지만 출장 등 부득이 하게 개별입영을 해야만 하는 사람,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받았지만 수송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차량수송 부대에 한함)은 입영방법 변경 신청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방법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신청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사전에 변경신청 없이 개별 입영한 경우에는 통지된 대로 차량탑승에 준하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1.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합니다. 입영여비 2.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요금만 지급됩니다. 지급 3.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 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민원포털 → 동원/ 예비군 → 여비지급 신청'화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치료, 취업 • 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면허 • 자격시험(운전면허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 활용능력 • 생 업이나 취업과 관련이 적은 교양분야 및 그 밖의 연중 상시 접수 또는 상시 검정 면허 • 자격시험에 응시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 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연기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우편, FAX, 방문 접수 입영일자 ※ 연기사유별 구비서류는 병무민원포털 「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확인, 주요업무수행 및 면허·자격 연기신청 취득시험응시 사유로 인한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동안 통틀어 2회로 연기 횟수가 제한됩니다. 2. 소집부대장의 「입영안내 서신」을 받고 소집부대에 불참의사를 전달한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방병무 청장에게 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훈련소집 기간 중에 해외체류 사유로 출국 예정인 사람은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은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 연락처)** '병무청홈페이지 → 동원/예비군 →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 전화번호' 참조** 1.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합니다.(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이름표,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전투복/ \* (군모착용) 베레모(디지털 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전투화 2.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 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 대여 및 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체제도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1. 통지서를 받은 이후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입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지역예비군훈련 통지서를 함께 받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http://www.mma.go.kr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0번(병무민원상담)	("캐릭터 또는 로고")		
• 사이버상담 :			

이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소집점검에 대리해 출석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시 훈련용) 통지번호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예비군부대)						
입영일시		(	4시간)			
입영부대						
입영장소 (모이는 장소)						
「병역법」 제53	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지 제73조제4항에 때	다라 전시근.	로소집전	검에
입영할 것을 통제	「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	<sup>녕무지청)징</sup>	- (직인)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1. 전시근로소집 점검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5~6년차에 대해 실시하며, 4시간 동안 부대편성 및 임무확인, 안보교육, 동원절차 등을 교육합니다.
- 2. 입영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예비군복장(예비군모, 예비군복, 군화 등)을 착용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공인자격증 등)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3. 질병, 결혼, 각종 시험응시, 직계 존·비속 사망 등의 사유로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 전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 연기를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지)청에 정해진 연기원서를 우편·FAX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그 밖에 전시근로소집 점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 바랍니다.